

## 직제규정

1975.10. 1 제정 1983. 7. 1 개정  
 1984. 8.13 개정 1987. 1.30 개정  
 1987. 3. 1 개정 1988. 3. 1 개정  
 1989. 3. 1 개정 1990. 2. 1 개정  
 1992. 7.24 개정 1994. 9. 9 개정  
 1995. 3. 1 개정 1996. 3.15 개정  
 1998. 7.17 개정 2001. 1. 8 개정  
 2001. 2.21 개정 2001.10.12 개정  
 2002. 1.31 개정 2003. 1. 1 개정  
 2003. 4.15 개정 2003. 5.12 개정  
 2004. 1. 1 개정 2004. 3. 1 개정  
 2004. 9. 1 개정 2005. 3. 1 개정  
 2005. 9. 1 개정 2006. 6. 1 개정  
 2007. 9. 1 개정 2011. 1. 1 개정  
 2012. 3. 1 개정 2013. 3. 1 일부개정  
 2013. 9. 1 일부개정 2014. 3. 1 일부개정  
 2014. 6. 1 일부개정 2014. 9. 1 일부개정  
 2015. 4. 9 일부개정 2016. 7. 1 일부개정  
 2017. 7. 1 일부개정 2018. 1. 1 일부개정  
 2018. 3. 19 일부개정 2019. 1. 1. 일부개정  
 2019. 7. 1. 일부개정 2019. 9. 1. 일부개정  
 2020. 2. 1. 일부개정 2020. 5. 1 일부개정  
 2020. 9. 17 일부개정  
 2021 2. 5 일부개정  
 <정책기획팀, 기획예산팀>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고려대학교(이하 이 대학교라 함)의 조직의 대강을 정하여 통일적이고 체계있는 교무의 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사무분장) 이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각 부서의 사무분장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 2 장 편 제

제 3 조 (기구) ① 이 대학교는 본부(비서실, 감사실, 기획예산처, 교무처, 학생처, 총무처, 관리처, 대외협력처, 디지털정보처, 연구처, 인재발굴처, 국제처, 연구기획본부, 대학원혁신본부), 산학협력단, KU 개척마을, 교양교육원, 교수학습개발원,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융합연구원, 크림스창업지원단, 데이터과학원, 세종캠퍼스 행정부서(세종비서실, 기획처, 교학처, 사무처, 입학홍보처, 연구산학처), 세종산학협력단, 세종교육혁신원, 미래인재개발원, 세종창업지원단, KUS대학혁신사업단, 대학일자리센터, 21개 대학·학부와 23개 대학원, 5개 부속교육기관, 17개 부속기관, 5개 기타기관,

145개 부설연구기관 및 의료원으로 구성한다.

- ② 제1항의 의료원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편제 및 조직에 관한 것은 의료원직제규정에 의한다.
- ③ 제1항의 산학협력단 및 세종산학협력단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편제 및 조직에 관한 것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및 세종산학협력단 정관에 의한다.

제 4 조 (대학,학부 및 대학원) 이 대학교에 다음의 대학,학부 및 대학원을 둔다.

1. 대학 : 경영대학, 문과대학, 생명과학대학, 정경대학, 이과대학, 공과대학, 의과대학, 사범대학, 간호대학, 보건과학대학, 정보대학, 과학기술대학, 약학대학, 문화스포츠대학, 글로벌비즈니스대학, 공공정책대학
2. 학부 : 디자인조형학부, 국제학부, 미디어학부, 자유전공학부, 정보보호학부
3. 일반대학원
4. 전문대학원 : 국제대학원, 정보보호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에너지환경대학원(그린스쿨), 기술경영전문대학원, KU-KIST융합대학원, 행정전문대학원
5. 특수대학원 : 교육대학원, 생명환경과학대학원, 정책대학원, 공학대학원, 경영정보대학원, 미디어대학원, 노동대학원, 법무대학원, 컴퓨터정보통신대학원, 문화스포츠대학원, 보건대학원, 임상치의학대학원, 의용과학대학원
6. 법학전문대학원

제 5 조 (부속교육기관) 이 대학교에 다음의 부속교육기관을 둔다.

1. 국제어학원
2. 평생교육원
3. 영재교육원
4. 국제교류교육원
5. 세종평생교육원

제 6 조 (부속기관) 이 대학교에 다음의 부속기관을 둔다.

1. 도서관
2. 박물관
3. 교육매체실
4. 체육위원회
5. 테크노콤플렉스
6. 인권·성평등센터
7. 방사선안전관리센터
8. 기술지주주식회사
9. 사회봉사단
10. 안암학사
11. 디자인혁신센터
12. 출판문화원
13. 노르딕-베네룩스 센터
14. 호연학사
15. 대학사업단
16. 캠퍼스타운조성추진단
17. 중앙실험동물센터

제 7 조 (기타기관) 이 대학교에 다음의 기타기관을 둔다.

1. 학생군사교육단
2. 고대신문사
3. 성북구건강가정지원센터

4. 공학교육혁신거점센터
5. 세종학생군사교육단

제 8 조 (부설연구기관) 이 대학교에 별표1과 같이 부설연구기관을 둔다.

제 9 조 (위원회) ① 총장의 정책결정 보좌 및 집행을 위하여 처장회의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기타 이 대학교의 각종 중요사항을 심의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 제 3 장 조 직

제 10조 (비서실) 총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비서실을 둔다.

제 11조 (감사실) 총장 직속으로 감사실을 둔다.

제 12조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에는 다음의 부서를 둔다.

1. 정책기획팀
2. 예산팀
3. 평가팀
4. 정보전략팀
5. 대학정책연구원

제 13조 (교무처) 교무처에는 다음의 부서를 둔다.

1. 교무팀
2. 학사팀
3. 교육혁신팀

제 14조 (학생처) 학생처에는 다음의 부서를 둔다.

1. 학생지원부
2. 경력개발센터
3. ONE-STOP서비스센터
4. 학생상담센터
5. 장애학생지원센터

제 15조 (총무처) 총무처에는 다음의 부서를 둔다.

1. 총무부
2. 인력개발부
3. 재무부
4. 병무행정팀

제 16조 (관리처) 관리처에는 다음의 부서를 둔다.

1. 관리팀
2. 건축팀
3. 안전관리팀
4. 시설운영팀

제 17조 (대외협력처) 대외협력처에는 다음의 부서를 둔다.

1. 대외협력부
2. 커뮤니케이션팀
3. 기금기획부

제 18조 (디지털정보처) 디지털정보처에는 다음의 부서를 둔다.

1. 정보개발부
2. 정보인프라부
3. 데이터Hub팀

제 19조 (연구처) 연구처에는 다음의 부서를 둔다.

1. 연구진흥팀
  2. 연구윤리센터
  3. 연구정보분석센터
- 제 20조 (인재발굴처) 인재발굴처에는 다음의 부서를 둔다.
1. 입학전형기획팀
  2. 입학전형관리실
  3. 인재발굴센터
- 제 21조 (국제처) 국제처에는 다음의 부서를 둔다.
1. 국제교류팀
  2. 국제교육팀
  3. 글로벌서비스센터
  4. 글로벌리더십센터
  5. 국제하계대학
  6. 국제동계대학
- 제 22조 (연구기획본부) 연구기획본부에는 다음의 부서를 둔다.
1. 연구기획팀
  2. R&D전략기획센터
- 제 23조 (대학원혁신본부) 대학원혁신본부에는 다음의 부서를 둔다
1. 대학원기획팀
  2. 대학원행정팀
  3. 인재양성팀
  4. 대학원혁신센터
- 제 24조 (KU개척마을) 연구부총장 직속으로 KU개척마을을 두며, 다음의 부서를 둔다.
1. 운영지원팀
  2. Makerspace
- 제 25조 (교양교육원) 교무부총장 직속으로 교양교육원에는 교양교육원행정실을 둔다.
- 제 26조 (교수학습개발원) 교무부총장 직속으로 교수학습개발원을 두며, 다음의 부서를 둔다.
1. 교수학습지원팀
  2. e-Learning 지원팀
- 제 27조 (대학혁신지원사업단) 교무부총장 직속으로 대학혁신지원사업단에는 혁신지원사업 운영팀을 둔다.
- 제 28조 (융합연구원) 연구부총장 직속으로 융합연구원에는 행정실을 둔다.
- 제 29조 (크림슨창업지원단) 연구부총장 직속으로 크림슨창업지원단을 두며, 다음의 부서를 둔다.
1. 창업지원국 : 창업지원팀, 창업원스톱팀
  2. 창업운영국 : 창업보육팀, 창업교육팀
- 제 30조 (데이터과학원) 연구부총장 직속으로 데이터과학원에는 행정실을 둔다.
- 제 31조 (세종비서실) 세종부총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세종비서실을 둔다.
- 제 32조 (기획처) 기획처에는 다음의 부서를 둔다.
1. 기획예산팀
  2. 평가분석팀
- 제 33조 (교학처) 교학처에는 다음의 부서를 둔다.
1. 교무학사팀
  2. 학생복지팀
  3. 세종장애학생지원센터
  4. 세종교양교육원

제 34조 (사무처) 사무처에는 다음의 부서를 둔다.

1. 총무팀
2. 재무팀
3. 시설팀
4. 안전팀
5. 세종병무행정팀

제 35조 (입학홍보처) 입학홍보처에는 다음의 부서를 둔다.

1. 입학팀
2. 홍보기금팀
3. 세종사회봉사단

제 36조 (연구산학처) 연구산학처에는 대학원연구교육팀을 둔다.

제 37조 (세종교육혁신원) 세종부총장 직속으로 세종교육혁신원을 두며, 다음의 부서를 둔다.

1. 교육혁신센터
2. 교수학습지원센터
3. 산학교육센터

제 38조 (미래인재개발원) 세종부총장 직속으로 미래인재개발원을 두며, 다음의 부서를 둔다.

1. 세종경력개발센터
2. 현장실습지원센터
3. 세종학생상담센터
4. 세종HRD사업단 : 사업운영팀

제 39조 (세종창업지원단) 세종부총장 직속으로 세종창업지원단을 두며, 다음의 부서를 둔다.

1. 세종창업교육센터
2. 오송창업보육센터
3. 세종창업보육센터

제 40조 (KUS대학혁신사업단) 세종부총장 직속으로 KUS대학혁신사업단을 두며, KUS대학 혁신사업단에는 KUS대학혁신사업단사업관리팀을 둔다.

제 41조 (대학일자리센터) 세종부총장 직속으로 대학일자리센터를 두며, 다음의 부서를 둔다.

1. 진로취업지원팀
2. 창업지원팀
3. 컨설팅팀

제 42조 (각 대학 및 대학원) ① 대학 및 대학원에는 행정실 등 행정부서를 둔다.

② 생명과학대학에는 행정실 외에 기기센터 및 식품과학종합실험실을 둔다.

③ 이과대학에는 행정실 외에 공동기기실을 둔다.

④ 의과대학에는 학사지원부 외에 의과학연구지원센터, 의학교육센터, 실험동물연구센터 및 생물안전센터를 둔다.

⑤ 공과대학에는 행정실 외에 공동실험실 및 공학교육혁신센터를 둔다.

⑥ 사범대학에는 행정실 외에 교직원 및 부설 교육연수원을 둔다.

⑦ 정보대학에는 행정실 외에 공동실험실을 둔다.

⑧ 보건과학대학에는 행정실 외에 보건의료과학기기센터를 둔다.

⑨ 글로벌비즈니스대학에는 행정실 외에 경영교육혁신센터를 둔다.

⑩ KU-KIST융합대학원에는 행정실 외에 K<sup>2</sup> 융합공동기기센터를 둔다.

⑪ 공학대학원에는 행정실 외에 도시재생교육센터를 둔다.

제 43조 (부속교육기관) ① 부속교육기관으로 다음의 부서를 둔다.

1. 국제어학원 : 외국어센터, 한국어센터
2. 평생교육원 : 학사지원부, 사회교육실, 방과후학교지원센터
3. 영재교육원
4. 국제교류교육원 : 국제교육센터
5. 세종평생교육원 : 운영지원팀

제 44조 (부속기관) 부속기관으로 다음의 부서를 둔다.

1. 도서관 : 중앙도서관 및 각 분관
  - 가. 중앙도서관 : 학술정보기획부, 학술정보개발부, 학술정보서비스부, 학술정보인프라부, 학술정보큐레이션부
  - 나. 세종학술정보원 : 학술정보지원팀, IT지원팀, 세종기록자료실
  - 다. 의학도서관 : 의학정보관리부
2. 박물관
  - 가. 학예부
  - 나. 기록자료실
3. 교육매체실 : 교육매체지원부
4. 체육위원회 : 체육지원부
5. 테크노콤플렉스 : 기획관리부
6. 인권·성평등센터
7. 방사선안전관리센터
8. 기술지주주식회사
9. 사회봉사단 : 사회봉사단지원부
10. 안암학사 : 관리운영팀
11. 디자인혁신센터
12. 출판문화원
13. 노르딕-베네룩스 센터
14. 호연학사 : 생활지원팀
15. 대학사업단
  - 가. 경영지원팀
  - 나. 농장 : 기획관리부
  - 다. 대학사업팀
16. 캠퍼스타운조성추진단
17. 중앙실험동물센터

제 45조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에 다음의 부서를 둔다.

1. 연구감사팀
2. 안암산학협력실
  - 가. 산학진흥팀
  - 나. 연구지원1팀
  - 다. 연구지원2팀
  - 라. 연구지원3팀
  - 마. 산학경영팀
  - 바. 산학구매팀
  - 사. 기술사업화센터
  - 아. KU소재부품장비기술지원센터
3. 의료원산학협력단 : 산학협력팀

제 46조 (세종산학협력단) 세종산학협력단에 다음의 부서를 둔다.

1. 기술기획팀
2. 연구지원팀

## 3. 연구전략기획팀

제 47조 (의료원) ① 의료원에는 행정부서, 안암병원, 구로병원, 안산병원을 둔다.

② 의료원에 다음의 행정부서를 둔다.

1. 감사팀
2. 의무기획처
  - 가. 대외협력실 : 교류협력팀, 커뮤니케이션팀
  - 나. 교육수련실 : 교육수련팀
  - 다. 의학지능정보실 : 정보기획팀, 정보개발팀
  - 라. 미래전략팀
  - 마. 경영평가팀
3. 의학연구처
  - 가. 연구전략본부 : 연구전략팀
  - 나. 산학협력팀
  - 다. 기술사업팀
  - 라. 연구대상자보호팀
4. 사무국
  - 가. 인사팀
  - 나. 노사협력팀
  - 다. 재무팀
  - 라. 구매팀
5. 기금사업본부 : 기금사업팀

제 48조 (각 부속병원) 각 부속병원에는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둔다.

1. 기획실
2. 홍보실 : 홍보팀
3. 진료부
4. 연구부
5. 경영관리실
6. 교육수련부
7. 적정진료관리부

## 제 4 장 직위 · 직무 · 직급

제 49조 (총장) 총장은 교무를 통괄하고 이 대학교를 대표한다.

제 50조 (부총장) ① 총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무부총장, 연구부총장, 세종부총장, 의무부총장 및 대학원장을 둔다.

② 각 부총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무부총장 : 교육, 학생, 입학, 일반행정, 대외업무 분야에서 총장 보좌
2. 연구부총장 : 연구 및 산학협력 분야에서 총장 보좌
3. 세종부총장 : 세종캠퍼스에 속하는 조직·기관에 관하여 총장 보좌
4. 의무부총장 : 의과대학과 대학원 의학계열, 보건대학원, 임상치의학대학원, 의학도서관과 산하 부설연구기관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총장 보좌
5. 대학원장 : 대학원에 관하여 총장 보좌

③ 교무부총장, 연구부총장, 세종부총장, 의무부총장 및 대학원장은 교수로 보한다.

④ 총장 유고시에는 교무부총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교무부총장도 유고시에는 연구부총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1조 (직위) ① 교육기관에 다음의 장을 두며,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다만, 외부의

다른 대학(또는 기관)과 협약에 의해 설립된 대학(대학원)의 경우에는 비전임 교원 또는 외부인사를 학장(대학원장)에 보임할 수 있다.

1. 대학·학부 : 경영대학장, 문과대학장, 생명과학대학장, 정경대학장, 이과대학장, 공과대학장, 의과대학장, 사범대학장, 간호대학장, 보건과학대학장, 정보대학장, 과학기술대학장, 약학대학장, 문화스포츠대학장, 글로벌비즈니스대학장, 공공정책대학장, 디자인조형학부장, 국제학부장, 미디어학부장, 자유전공학부장, 정보보호학부장, 각 대학 부학장, 학과(부)장, 주임
  2. 대학원 : 대학원장, 국제대학원장, 정보보호대학원장, 경영전문대학원장, 의학전문대학원장, 에너지환경대학원(그린스쿨)장,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 KU-KIST 융합대학원장, 행정전문대학원장, 교육대학원장, 생명환경과학대학원장, 정책대학원장, 공학대학원장, 경영정보대학원장, 미디어대학원장, 노동대학원장, 법무대학원장, 컴퓨터정보통신대학원장, 문화스포츠대학원장, 보건대학원장, 임상치의학대학원장, 의용과학대학원장, 법학전문대학원장, 각 대학원 부원장, 주임
- ② 본부에 다음의 장을 두며, 교수·부교수 또는 부장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교무처장, 학생처장, 디지털정보처장, 대학원혁신본부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비서실장 및 중앙도서관 부관장은 부장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1. 실장, 처장 및 본부장 : 기획예산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총무처장, 관리처장, 대외협력처장, 디지털정보처장, 연구처장, 인재발굴처장, 국제처장, 감사실장, 연구기획본부장, 대학원혁신본부장
  2. 비서실장, 중앙도서관 부관장 및 각 부처장
  3. 기타 : 학생상담센터장, 장애학생지원센터장, 입학전형관리실장, 인재발굴센터장, 글로벌리더십센터장, R&D전략기획센터장, 연구윤리센터장, 연구정보분석센터장, 대학정책연구원장
- ③ 세종캠퍼스 행정부서에 다음의 장을 두며, 교수·부교수 또는 부장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교학처장, 연구산학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1. 처장 : 기획처장, 교학처장, 사무처장, 입학홍보처장, 연구산학처장
  2. 부처장 : 사무처 부처장
  3. 기타 : 세종교양교육원장, 세종장애학생지원센터장, 세종사회봉사단장
- ④ 부속기관에 부속기관의 장을 두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다만, 도서관장 및 분관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하며, 기록자료실장은 부장 이상의 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
- ⑤ 부속교육기관에 부속교육기관의 장을 두며, 전임교원으로 보한다.
- ⑥ 부설연구기관에 부설연구기관장을 두며, 전임교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비전임교원으로 보할 수 있다.
- ⑦ 기타기관에 기타기관의 장을 두며, 전임교원으로 보한다.
- ⑧ 산학협력단에 산학협력단장을 두며, 교수 또는 부장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 ⑨ 대학사업단에 단장을 두며, 교수로 보한다.
- ⑩ KU 개척마을에 촌장을 두며, 교수·부교수 또는 부장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비전임교원 또는 외부인사로 보할 수 있다. Makerspace에는 소장을 두며 전임교원으로 보한다.
- ⑪ 캠퍼스타운 조성 추진단에 추진단장을 두며, 전임교원으로 보한다.
- ⑫ 교양교육원에 원장을 두며, 전임교원으로 보한다.
- ⑬ 교수학습개발원에 원장을 두며, 전임교원으로 보한다.
- ⑭ 대학혁신지원사업단에 단장을 두며, 기획예산처장이 겸한다.
- ⑮ 융합연구원에 원장을 두며, 전임교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비전임교원으로 보할 수 있다.



- ①⑥ 크립슨창업지원단에는 단장을 두고, 전임교원으로 보하며, 창업지원국에는 국장을 두고 외부인사로 보한다. 창업운영국에는 국장을 두고 차장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 ①⑦ 데이터과학원에 원장을 두며, 전임교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비전임교원으로 보할 수 있다.
- ①⑧ 세종교육혁신원에 원장을 두고, 기획처장이 겸하며, 교육혁신센터, 교수학습지원센터 및 산학교육센터에 센터장을 두고, 전임교원으로 보한다.
- ①⑨ 미래인재개발원에 원장을 두고, 전임교원으로 보하며, 세종경력개발센터에 팀장을 두고, 팀장은 부장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 ②⑩ 세종창업지원단에 세종창업지원단장을 두고, 교원으로 보하며, 세종창업교육센터, 오송창업보육센터 및 세종창업보육센터에 센터장을 두고, 교원으로 보한다.
- ②⑪ 세종산학협력단에 세종산학협력단장을 두며, 교수 또는 부장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 ②⑫ KUS대학혁신사업단에 단장을 두며, 기획처장이 겸한다.
- ②⑬ 대학일자리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미래인재개발원장이 겸한다.
- ②⑭ 의료원에 다음의 장을 두며, 교원 또는 부장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1. 의료원 : 의료원장, 감사팀장, 의무기획처장, 의학연구처장, 사무국장, 기금사업본부장, 의학도서관장 등
  2. 각 병원 : 각 병원장, 진료부원장, 연구부원장 등
  3. 사무부서 : 팀장 등
  4. 기타 사무부서에는 부(팀)장, 차(팀)장을 두며 이외의 보직은 의료원직제규정에 따로 정한다
- 제 52조 (직무) ① 대학, 대학원 및 각 부서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사무를 통괄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 ② 부학(원)장은 대학(원)장을 보좌하여 당해 대학(원)의 학사행정 및 학생지도 업무를 처리한다.
- ③ 비서실장은 행정업무에 관하여 총장을, 부처장은 처장을, 중앙도서관 부관장은 중앙도서관 행정업무에 관하여 도서관장을 보좌하고, 부(팀)장 및 차(팀)장은 소속 부서장을 보좌하며, 당해 부서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 제 53조 (직급) 교원의 직급은 이 대학교 교원인사규정에 따른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7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의 개정에 따라 타 규정의 해당사항(명칭)은 개정된 것으로 본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1월 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의 개정에 따라 타 규정의 해당사항 명칭은 개정된 것으로 본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2월 2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의 개정에 따라 타 규정의 해당사항 명칭은 개정된 것으로 본다.

##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10월 1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1월 3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의 개정에 따라 타 규정의 해당사항 명칭은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전면정비)
2. (경과조치) 이 규정의 개정에 따라 타 규정의 해당사항 명칭은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3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8조 제91호 및 제92호 신설, 제3조 제1항, 제13조, 제31조 제1항 제3호 개정)
2. (경과조치) 이 규정의 개정에 따라 타 규정의 해당사항 명칭은 개정된 것으로 보며 제8조 제91호(척추측만증연구소)는 2003년 2월 3일, 제8조 제92호(줄기세포연구소)는 2003년 3월 7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3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5조 제3호 신설, 제3조제1항, 제12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제2항, 제24조, 제31조제1항 제3호 및 제8호와 제2항 제1호 개정)
2. (경과조치) 이 규정의 개정에 따라 타 규정의 해당사항 명칭은 개정된 것으로 보며, 제3조(기구) 기획예산처, 연구처, 입학처의 명칭변경은 2003년 4월 28일, 제23조제2항 생명환경과학대학 공동기기센터의 명칭변경은 2003년 3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제4호, 제7조 제6호, 제8조 제93호 내지 95호, 제19조 신설, 제3조 제1항, 제5조, 제8조, 제16조, 제18조, 제21조, 제25조, 제32조, 제33조 제2항 개정, 제20조 내지 제34조 조번호 변경)
2. (경과조치) ① 이 규정의 개정에 따라 타 규정의 해당사항 명칭은 개정된 것으로 본다.  
 ② 제5조 제4호의 교수학습개발원과 제25조 제2항의 교수학습개발원 산하 교수지원실, 학습지원실, 교육자료지원팀은 2003년 5월 13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③ 제8조 제93호 식물신호네트워크연구센터는 2003년 8월 1일, 제94호 한국인 공장기센터는 2003년 10월 9일, 제95호 산학연컨소시엄센터는 2003년 10월 28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④ 제19조 서창기획홍보처 및 산하부서인 서창기획예산팀과 서창입시팀, 제21조의 서창재무팀은 2003년 10월 15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⑤ 제16조의 안전관리팀은 2003년 12월 2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⑥ 제8조 제12호 언론연구소 및 제19호 독일어권문화연구소는 2003년 10월 28일, 제25조 제2항의 한국어문화연구센터는 2003년 6월 13일부터 명칭변경된 것으로 본다.

⑦ 제7조 제6호 방사선동위원소실의 편제는 2003년 12월 3일, 제32조 제1항 제8호의 국제교육원 부원장 직제는 2003년 9월 23일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제3항, 제7조 제7호 및 제8호, 제8조 제96호, 제24조 제7항, 제27조, 제29조 제1호, 제33조 제1항 제12호 및 제2항 제2호 신설,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제8조, 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2항, 제26조 제2항 제3호 및 제9항, 제28조 제2항 및 제3항, 제29조, 제33조 개정, 제28조 내지 제35조 조번호 변경)
2. (경과조치) ① 이 규정의 개정에 따라 타 규정의 해당사항 명칭은 개정된 것으로 본다.  
 ② 제3조 제1항의 산학협력단은 2004년 2월 25일 설치되었으며, 제7조 제7호의 태양광 사업단은 2003년 12월 31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③ 제7조 제8호의 서창학생생활상담소, 제8조 제96호의 차세대인터넷연구센터, 제24조 제7항의 자연과학대학 산하 기술관리팀, 제26조 제2항 제3호의 서창학술정보원 산하 학술정보지원팀과 IT지원팀은 2004년 2월 13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④ 제8조 제65호의 건강기능식품연구센터는 2004년 1월 28일부터 명칭변경된 것으로 본다.  
 ⑤ 제20조의 서창취업·학생복지팀, 제21조의 서창병무행정팀, 제25조제2항의 서창국제어학원 학사지원팀, 제26조 제9항의 호연학사 관리운영팀의 명칭변경은 2004년 2월 13일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 제97호 내지 제102호, 제10조 제1항 신설, 제3조 제1항, 제8조 제76호, 제10조, 제15조, 제26조 제5항 개정)
2. (경과조치) ① 이 규정의 개정에 따라 타 규정의 해당사항 명칭은 개정된 것으로 본다.  
 ② 제8조 제76호의 일본학연구센터는 2004년 7월 23일 명칭변경된 것으로 보며, 제97호 식품생의학안전연구소는 2004년 3월 25일에, 제98호 유전체맞단백체환경독성센터는 2004년 4월 13일에, 제99호 지능로봇연구센터는 2004년 4월 21일에, 제100호 환경GIS/RS센터와 제101호 바이오마카나노공학연구소는 2004년 7월 9일에, 제102호 인간행동과 유전자연구소는 2004년 7월 23일에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③ 제10조 제1항의 처장회의는 2004년 3월 4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④ 제15조의 인력개발팀은 기존 교육연수팀을 인사팀으로 통합한 후 인사팀을 명칭 변경한 것으로 2004년 5월 18일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 제103호 내지 제105호, 제19조 신설,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8조 제64호, 제12조, 제21조, 제25조 제7항, 제26조 제2항, 제27조 제2항 제1호 및 제3항, 제30조 제2호, 제34조 제1항 제5호 및 제8호, 제2항 제1호 개정, 제20조 내지 제36조 조번호 변경)
2. (경과조치) ① 이 규정의 개정에 따라 타 규정의 해당사항 명칭은 개정된 것으로 본다.  
 ② 제8조 제64호의 환경생태연구소는 2004년 11월 26일 명칭변경된 것으로

보며, 제103호 과학기술학연구소는 2004년 9월 22일에, 제104호 RFID연구센터와 제105호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04년 11월 26일에 설치된 것으로 본다.

- ③ 제12조의 경영감사팀은 2004년 11월 29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 ④ 제19조의 서창종합인력개발센터와 그 하부 취업정보팀의 신설 및 제21조의 서창학생복지팀의 명칭변경은 2004년 12월 6일부터 적용한다.
- ⑤ 제26조 제2항의 교수학습지원팀의 명칭변경 및 제34조 제1항 제8호의 교수학습개발원 부원장 직제의 신설은 2004년 9월 24일부터 적용한다.
- ⑥ 제27조 제2항 제1호의 CDL운영부는 2005년 1월 21일에 제3항의 기록자료실은 2004년 11월 26일에 설치된 것으로 본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 제106호 내지 제111호 신설, 제3조 제1항, 제8조 제18호, 제21호, 제36호, 제44호, 제101호, 제13조, 제27조 제2항 제3호 개정)
2. (경과조치) ① 이 규정의 개정에 따라 타 규정의 해당사항 명칭은 개정된 것으로 본다.
  - ② 제8조 제18호의 여행의학연구소는 2005년 8월 25일에, 제21호의 러시아·CIS연구소는 2005년 3월 17일에, 제36호의 의료법학연구소는 2005년 8월 25일에, 제44호의 고고환경연구소는 2005년 7월 5일에, 제101호의 나노바이오공학연구소는 2005년 8월 25일에 명칭변경된 것으로 보며, 제106호 한자·한문연구소, 제107호 건축방재연구소, 제108호 노인건강연구소, 제109호 지하공간기술연구소는 2005년 3월 17일에, 제110호 레토릭연구소는 2005년 3월 28일에, 제111호 역사연구소는 2005년 6월 10일에 설치된 것으로 본다.
  - ③ 제13조의 학적·수업지원팀의 명칭변경은 2005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④ 제27조 제3항 제1호의 서창기록자료실은 2005년 3월 28일에 설치된 것으로 본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 제112호, 113호, 제27조 제2항 제5호 신설, 제2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1조, 제27조 제2항, 제31조, 제3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개정, 제9조 내지 제34조 조번호 변경)
2. (경과조치) ① 이 규정의 개정에 따라 타 규정의 해당사항 명칭은 개정된 것으로 본다.
  - ② 제8조 제112호의 부부상담연구소는 2005년 10월 13일에 설치된 것으로 보며, 제113호 보건과학연구소는 보건대학 통합에 따라 2006년 3월 1일에 본교에 이전된 것으로 본다.
  - ③ 제11조의 기획평가팀의 명칭변경은 2006년 5월 8일부터 적용한다.
  - ④ 보건대학 통합에 따른 조직개편에 따라 이전 규정의 제9조(보건대학)과 제31조(보건대학)은 삭제하며, 2006년 3월 21일자 시행 개정 법인정관에 의거 보건대학은 2011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제5호, 제7조 제8호 및 제10호, 제8조 제112호 내지 124호, 제22조, 제29조 제4항 및 제5항 신설, 전 규정 제8조 제52호 및 제87호, 제24조 제6항 삭제,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및 제2항, 제6조 제4호, 제7조 제5호, 제8조 제22호, 제87호 및 제103호, 제19조, 제25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26조 제1항 및 제2항, 제27조 제1항, 제5항, 제9항, 제28조, 제29조 제2항 및 제3항, 제32조 제2

항, 제3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 제8호, 제14호, 제2항 제1호, 제3호 개정, 제22조 내지 제35조 조번호 변경)

2. (경과조치) ① 이 규정의 개정에 따라 타 규정의 해당사항 명칭은 개정된 것으로 본다.
- ② 제4조의 미술학부의 조형학부로의 명칭변경은 2007년3월1일자로, 경영대학원 폐지 및 경영전문대학원의 신설은 2006년9월1일자로, 정보보호대학원의 정보경영전문대학원으로서의 명칭 변경은 2006년9월1일자로 적용한다.
- ③ 제5조의 글로벌리더십센터는 2007년7월16일자로 설치된 것으로, 제7조의 성희룡 및 성폭력상담소의 양성평등센터로의 명칭 변경은 2006년10월10일자로, 고층건물시공자동화연구단은 2006년12월29일자로, 서창학생군사교육단은 2007년5월8일자로 각각 설치된 것으로 본다.
- ④ 제8조의 희귀질환연구소는 2006년5월15일자로, 응용문화연구소는 2006년5월25일자로, 거버넌스연구소는 2006년5월26일자로, 스페인·라틴아메리카연구소는 2007년1월19일자로, 동아시아문화교류연구소는 2007년1월19일자로, 경제통계연구소는 2007년1월19일자로, 광전자신소재연구소는 2007년2월8일자로, 국어소통능력연구센터는 2007년4월3일자로, 서창공학교육센터는 2007년4월3일자로, 정보창의교육연구소는 2007년7월16일자로, 통합의학연구소는 2007년7월16일자로, 타임도메인나노기능소자연구센터는 2007년7월16일자로, 지혜과학연구센터는 2007년7월26일자로 각각 설치된 것으로 본다.
- ⑤ 제8조의 의과학연구원은 2007년1월17일자로 해산된 것으로 보며, 해당 업무는 의학기재실이 명칭 변경된 의과대학 의과학연구지원센터로 이관한다.
- ⑥ 제8조의 공학교육연구센터의 해산은 2007년6월1일자로, 전력시스템기술연구센터의 대정전예방기술연구센터로의 명칭 변경은 2007년2월 7일자로 각각 적용한다.
- ⑦ 제8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07년4월27일자로 인간생활환경연구소로 명칭 변경하고, 다시 2007년8월27일자로 사회정서발달연구소로 명칭 변경된 것으로 본다.
- ⑧ 제19조의 서창캠퍼스 조직개편에 의한 기획처와 입학홍보처의 설치 및 산하 부서의 개편은 2007년 5월 8일자로, 공과대학 공학교육혁신센터 설치는 2007년6월1일자로 각각 적용한다.
- ⑨ 제28조의 의료원 조직개편에 의한 의무기획처, 의무교학처 설치 및 산하 부서의 개편은 2007년5월8일자로 적용하며, 교수학습개발원내 e-Learning지원팀은 2007년8월27일자로 설치된 것으로 보며, 제26조의 호연학사 관리운영팀의 생활지원팀으로 명칭 변경은 2007년8월27일자로 적용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제11호 내지 제12호, 제8조 제103호 내지 120호, 제24조 내지 제26조 신설, 제6조 제10호, 제7조 제5호, 제7조 제23호, 제45호, 제49호, 제56호, 제65호 내지 제67호, 제69호, 제71호, 제76호 내지 제78호, 제82호, 제84호 내지 제85호, 제87호, 제91호, 제93호, 제96호, 제105호, 제114호, 제123호, 제18조 삭제, 제3조 제1항,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3조, 제16조, 제20조, 제22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내지 제30조, 제35조 개정, 제18조 내지 제37조 조번호 변경)
2. (경과조치) ① 이 규정의 개정에 따라 타 규정의 해당사항 명칭은 개정된 것으로 본다.
- ② 제4조의 언론학부의 미디어학부로의 명칭변경은 2010년3월1일자로, 자유전공학부의 신설은 2009년3월1일자로, 약학대학의 신설은 2010년9월1일자로, 사회체육학부의 신설은 2011년3월1일자로, 의학전문대학원의 신설은 2008년3월1일자로, 법학전문대학원의 신설은 2009년3월1일자로, 그린스쿨대학원의 신설은 2010년3월1일자로, 융합소프트웨어대학원의 신설은 2010년3월1일자로,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의 신설은 2011년3월1일자로 적용한다.

- ③ 제5조의 사회교육원의 평생교육원 명칭변경은 2009년7월24일자로, 세종국제어학원의 국제교류교육원으로서의 명칭변경은 2010년 1월25일자로, 제6조의 한국산학연중합연구원의 테크노콤플렉스로서의 명칭변경은 2008년12월22일자로, 양성평등센터의 부속기관으로서의 소속변경은 2009년4월6일자로,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는 2008년9월11일자로, 성북구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는 2009년3월3일자로, 고려대학교기술지주주식회사의 설치는 2009년10월1일자로, 세종학생생활상담소의 세종학생상담센터로서의 명칭변경은 2010년1월15일자로, 건강바이오식품사업단의 설치는 2009년12월3일자로, 세종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는 2010년8월11일자로 각각 된 것으로 본다.
- ④ 제7조의 태양광사업단은 2009년7월28일자로 해산, 고층건물시공자동화연구단은 2009년7월28일자로 편제조정된 것으로 본다.
- ⑤ 제8조의 임상치의학연구소는 2007년10월16일자로, 독서논술연구소는 2008년3월3일자로, 건축도시연구소는 2008년6월4일자로, 영어교육연구소는 2008년6월4일자로, 고등교육정책연구소는 2008년8월25일자로, 사회체육연구소는 2008년9월2일자로, 두뇌동기연구소는 2008년11월13일자로, 차세대게임연구센터는 2008년11월13일자로, 계량금융기술연구소는 2008년11월13일자로, 재생의학연구소는 2008년12월12일자로, 뇌공학연구소는 2009년5월28일자로, 한국사연구소는 2009년7월27일자로, 와인연구소는 2009년6월2일자로, 바이오메디컬연구소는 2009년8월27일자로, 근거중심의학연구소는 2009년9월7일자로, 동아시아미술문화연구소는 2010년4월26일자로, 한국어문교육연구소는 2010년7월8일자로, 통신수학연구소는 2010년6월28일자로, 기초과학연구소는 2010년10월12일자로, 부인암연구소는 2011년1월22일자로 각각 설치된 것으로 본다.
- ⑥ 제8조의 언론연구소의 정보문화연구소로서의 명칭변경은 2008년6월4 일자로, 기초과학연구소의 기초과학연구원으로서의 명칭변경은 2010년5월11일평화연구소의 평화와민주주의 연구소로서의 명칭변경은 2010년4월29일자로, 전략광물자원연구센터의 전략광물자원연구소로서의 명칭변경은 2009년8월17일자로, 방재과학기술연구센터의 방재과학기술연구소로서의 명칭변경은 2010년6월30일자로, 강구조 공학기술센터의 초고층초장대기술연구소로서의 명칭변경은 2009년8월19일자로, 정보보호기술연구센터의 정보보호연구원으로서의 명칭변경은 2008년3월3일자로, 일본학연구센터의 일본연구센터로서의 명칭변경은 2008년5월1일자로, 동북아경제경영연구소의 지출발전연구소로서의 명칭변경은 2010년5월6일자로, RFID 연구소의 미래네트워크연구소로서의 명칭변경은 2010년6월30일자로, 레토릭연구소의 번역과레토릭연구소로서의 명칭변경은 2009년7월27일자로 적용한다.
- ⑦ 제8조의 성형재건특수외과연구소의 해산은 2010년10월27일자로, 첨단재료화학연구소의 해산은 2009년9월16일자로, 환경연구원의 해산은 2008년8월18일자로, 소화기연구소의 해산은 2010년10월27일자로, 인공시각연구센터의 해산은 2009년9월16일자로, 세포사멸연구센터의 해산은 2009년9월16일자로, 북한학연구소의 해산은 2009년7월27일자로, 전자광감응분자연구센터의 해산은 2009년9월16일자로, 비뇨기종양유전자치료센터의 해산은 2008년8월18일자로, 유변공정연구센터의 해산은 2009년9월16일자로, 언어문화연구원의 해산은 2008년8월18일자로, 청소년과학기술진흥센터의 해산은 1009년9월16일자로, 건축방재연구소의 해산은 2009년7월27일자로, 거버넌스연구소의 해산은 2010년10월27일자로 적용한다.
- ⑧ 제8조의 신경망동력학연구센터, 다차원분광학연구센터, 통신수학연구센터, 대정전예방기술연구센터, 식물신호네트워크연구센터, 유전체및단백체환경독성센터, 타임도메인나노기능소자연구센터의 편제조정은 각각 2009년 8월5일자로 적용하며, 지능로봇연구센터의 편제조정은 2010년9월29일자로 적용하며, 산학연컨소시엄센터는 2008년6월4일자로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로 명칭변경후 2009년8월5일자로 편제조정된 것으로 본다.
- ⑨ 인간중심제품혁신센터는 2007년10월16일자로 설치되어 2009년8월5일자로 편제조정되고, 식물대기온도센서연구센터는 2009년1월13일자로 설치되어 2009년8월5일자로 편제조정되고, 모바일태양광발전시스템용정보소재연구센터는 2008년9월2일자로 설치되고 2008

년11월13일자 태양광정보소재연구센터로 명칭변경후 2009년8월5일자로 편제조정된 것으로 본다.

⑩ 제13조의 취업지원팀의 경력개발센터로의 명칭변경은 2007년7월16일자로, 세종종합인력개발센터의 폐지 및 세종경력개발센터의 설치는 2010년1월22일자로, 연구지원팀의 연구진흥팀으로의 명칭변경은 2008년2월19일자로, 입학사정관실의 개편 설치는 2008년12월9일자로, 국제처의 설치는 2007년10월10일자로, 교양교육원의 설치는 2009년6월30일자로, 사회봉사단의 설치는 2008년10월6일자로, 국제어학원의 외국어교육센터 및 한국어문화교육센터로의 개편은 2009년11월27일자로, 평생교육원 방과후학교지원센터의 설치는 2009년12월18일자로, 중앙도서관의 학술정보관리부, 학술정보열람부, 학술정보디지털부, 학술연구지원부로의 개편은 2010년3월1일자로, 외국학술지원센터 설치는 2010년1월12일자로, 산학협력단 안암산학협력실의 산학기획부, 연구지원부, 기술사업부, 경영지원부의 설치는 2008년10월29일자로 적용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 제122호 내지 제131호, 제11조 신설, 제3조 제1항, 제5조, 제21조, 제29조 제1항, 제35조 제1항, 제2항, 제36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 개정, 제12조 내지 제38조 조번호 변경)
2. (경과조치) ① 이 규정의 개정에 따라 타 규정의 해당사항 명칭은 개정된 것으로 본다.
  - ② 제3조, 제11조, 제37조의 미래전략실 및 미래전략실장의 신설은 2011년3월3일자로, 제5조 및 제21조의 글로벌리더십센터의 소속변경은 2011년5월3일자로, 제21조의 국제교육팀 폐지는 2011년3월3일자로, 제35조의 대외부총장 신설은 2011년3월3일자로 각각 적용한다.
  - ③ 제7조의 영재교육원 신설은 2011년11월15일자로 적용한다.
  - ④ 제8조의 공공정책연구소, 전력시스템기술연구소, 융합소프트웨어연구소는 2011년2월7일자로, 의료기기임상시험연구소는 2011년2월16일자로, 동아시아인문사회연구원, 융합문명연구원은 2011년2월23일자로, 번역인문학연구원은 2011년6월28일자로, 외상연구소, 아시아태평양인플루엔자연구소, 난치성질환중개연구소는 2011년7월8일자로, 나노기술연구소는 2012년1월2일자로, 미래국토연구소, 한국문화재복원연구소는 2012년1월5일자로, 실용해부연구소는 2012년1월6일자로 각각 설치된 것으로 본다.
  - ⑤ 제8조의 차세대인터넷연구센터가 전기전자공학연구소로 명칭변경된 것은 2012년3월6일자로, 바이오메디컬연구소가 약과학연구소로 명칭변경된 것은 2011년11월14일자로 각각 적용한다.
  - ⑥ 제8조의 신장병연구소의 해산은 2012년1월17일자로, 독서논술연구소, EU연구센터, 한국검출기연구소, 건축도시연구소의 해산은 2012년2월16일자로 각각 적용한다.
  - ⑦ 제19조의 연구정보분석센터의 신설은 2011년6월16일자로, 제23조의 사회봉사단지원부의 폐지는 2011년4월12일자로 적용한다.
  - ⑧ 제24조의 KRD사업단은 2009년4월17일자로 교무부총장 산하에 KRD사무국으로 설치되어 2011년4월28일자로 KRD사업단으로 명칭변경된 것으로 본다.
  - ⑨ 제29조의 생명과학대학의 공동기기센터와 기재관리실은 2012년5월16일자로 기기센터로 통합된 것으로 보며, 이과대학 공동기기실의 설치는 2007년10월10일자로, 의과대학내교수학습개발원의 설치는 2008년12월12일자로, 실험동물연구센터의 설치는 2012년5월5일자로, 사범대학의 중등교육연수원이 교육연수원으로 명칭변경된 것은 2008년3월25일자로, 정보통신대학 공동실험실의 설치는 2011년4월28일자로, 경상대학 경영교육혁신센터의 설치는 2008년12월19일자로 각각 적용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및 제2항 개정, 제7조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삭제, 제8조 제26호 개정, 제8조 131호 신설,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개정, 제22조, 제23조 개정, 제24조 신설, 제29조 제8항 신설,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14호 개정, 제37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 개정, 제37조 제3항 제2호 개정, 제38조 제3항 개정)
2. (경과조치) ① 이 규정의 개정에 따라 타 규정의 해당사항 명칭은 개정된 것으로 본다.
  - ② 제3조 제1항, 제10조 및 제37조 제1항 제4호의 비서실은 2012년 9월 1일자로 명칭변경된 것으로 본다.
  - ③ 제3조 제1항의 사회봉사단의 편제조정 및, 부속사업단의 신설은 기구·직제 조정에 따라 2012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제1항의 KRD사업단의 신설은 2012년 9월 1일자로 행정대외부총장 산하로 편제조정된 것으로 본다.
  - ④ 정보보호학부는 2012년 3월 1일자로 신설된 것으로 본다.
  - ⑤ 기구·직제 조정에 따라 이전 규정의 제7조(기타기관)의 상조회와 장애학생지원센터는 2012년 9월 1일부로 각각 제15조(총무처)와 제14조(학생처) 산하로 편제조정된 것으로 본다.
  - ⑥ 제7조(기타기관) 제3호 방사성동위원소실의 방사선안전관리센터로의 명칭변경은 2013년 1월 12일자로 조정된 것으로 본다.
  - ⑦ 벤처창업보육센터 폐지 및 창업보육센터 신설에 따라 이전 규정의 제7조(부속기관) 제4호벤처창업보육센터는 2012년 9월 2일부로 삭제하며, 제32조(산학협력단)의 창업보육센터는 2012년 9월 2일자로 신설된 것으로 본다.
  - ⑧ 제8조(부설연구기관) 제6호의 세종경영연구소 명칭변경은 201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⑨ 제8조(부설연구기관) 제131호 알레르기면역연구소는 2012년 11월 21일 신설된 것으로 본다.
  - ⑩ 제10조(비서실)은 2012년 10월 12일자로 편제조정된 것으로 본다.
  - ⑪ 제12조(기획예산처)는 2012년 9월 1일자로 기획팀, 예산팀, 평가팀으로 명칭변경되어 편제조정된 것으로 본다.
  - ⑫ 제13조(교무처) 교양교육실은 2012년 9월 1일자로 신설된 것으로 보며, 이전 규정의 제22조(교양교육원)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
  - ⑬ 제22조(사회봉사단), 제23조(KRD사업단) 및 제24조(부속사업단)은 2012년 9월 1일자로 행정대외부총장 소속으로 편제조정된 것으로 본다.
  - ⑭ 제24조(부속사업단)은 2012년 9월 1일자로 신설된 것으로 본다.
  - ⑮ 제29조(각 대학 및 대학원) 제8항 보건의료과학기기센터는 2012년 11월 1일자로 신설된 것으로 본다.
  - ⑯ 제32조(산학협력단)의 신수종BT융합산업창업보육센터는 2011년 7월 4일자로 신설된 것으로 본다.
  - ⑰ 제33조의 의료원 조직개편에 의한 산하부서의 개편은 2012년 10월 5일자로 적용한다.
  - ⑱ 제34조의 각 병원 조직개편에 의한 산하부서의 개편은 2012년 10월 5일자로 적용한다.
  - ⑲ 행정대외부총장으로의 명칭변경 및 제36조의 각 부총장 업무분장은 2012년 9월 1일자로 조정된 것으로 본다.
  - ⑳ 제37조(직위)의 부처장 직제 신설은 2012년 9월 1일자로, 차장 직제 폐지는 2012년 11월 8일자로 적용한다.
  - ㉑ 제37조(직위) 제2항의 학장과 대학원장 임면에 관한 사항은 2012년 11월 8일자로 적



용한다.

㉔ 제37조(직위) 제1항 제8호의 부속교육기관의 직위 중 이전 규정의 교수학습개발원 부원장 직위는 2008년 12월 8일자로 폐지된 것으로 본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제1항 개정, 제6조 6호, 제8조 제23호, 제58호, 제95호, 제112호 삭제, 제114호 개정, 제128호, 제129호, 제130호, 제131호, 제132호, 제133호, 제134호 신설,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7조 개정, 제22조 신설, 제23조 삭제, 제26조 개정, 제31조 제1항 개정, 제7항 삭제, 제32조 개정, 제37조 제1항 개정)
2. (경과조치) ① 이 규정의 개정에 따라 타 규정의 해당사항 명칭은 개정된 것으로 본다.
  - ② 제3조 제1항, 제37조 제1항 제3호의 감사실 부서 신설 및 감사실장 직위 신설은 기구·직제 신설에 따라 2013년 5월 28일부터 적용한다.
  - ③ 제6조 제6호, 제14조, 제31조, 제37조 제3호의 개정은 학생상담센터 편제 조정에 따라 2013년 3월 18일부터 적용한다.
  - ④ 제8조(부설연구기관) 제23호 스포츠과학연구소는 2013년 2월 27일자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
  - ⑤ 제8조(부설연구기관) 제58호 의사소통연구소는 2013년 2월 27일자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
  - ⑥ 제8조(부설연구기관) 제95호 세종공학교육센터는 2013년 8월 22일자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
  - ⑦ 제8조(부설연구기관) 제112호 동아시아미술문화연구소는 2013년 3월 26일자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
  - ⑧ 제8조(부설연구기관) 제110호 수리과학연구소 명칭변경은 2013년 6월 26일부터 적용한다.
  - ⑨ 제8조(부설연구기관) 제128호 생체활성분자연구소는 2013년 1월 4일자로 신설된 것으로 본다.
  - ⑩ 제8조(부설연구기관) 제129호 한류융복합연구소는 2013년 4월 10일자로 신설된 것으로 본다.
  - ⑪ 제8조(부설연구기관) 제130호 대사중후군연구소는 2013년 4월 10일자로 신설된 것으로 본다.
  - ⑫ 제8조(부설연구기관) 제131호 염증제어연구소는 2013년 4월 10일자로 신설된 것으로 본다.
  - ⑬ 제8조(부설연구기관) 제132호 미래성장연구소는 2013년 7월 2일자로 신설된 것으로 본다.
  - ⑭ 제8조(부설연구기관) 제133호 국제개발협력연구원은 2013년 7월 16일자로 신설된 것으로 본다.
  - ⑮ 제8조(부설연구기관) 제134호 융합기술연구소는 2013년 7월 22일자로 신설된 것으로 본다.
  - ⑯ 제11조(미래전략실)의 개정은 전략기획팀의 해산으로 2013년 5월 28일부터 적용한다.
  - ⑰ 제17조(대외협력처) 커뮤니케이션팀 명칭변경은 2013년 5월 28일부터 적용한다.
  - ⑱ 제22조(감사실) 신설은 행정조직개편에 따라 2013년 5월 28일부터 적용한다.
  - ⑲ 제23조(KRD사업단) 삭제 및 제37조(직위)의 제1항 제11호의 개정은 행정조직개편에 따라 2013년 5월 28일부터 적용한다.

㉔ 제26조(교학처)의 개정은 One-stop서비스센터 폐지 및 세종교수학습지원팀 신설에 따라 2013년 5월 21일부터 적용한다.

㉕ 제32조(산학협력단) BT융합창업보육센터 명칭변경은 2013년 8월 6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8조, 제12조(감사실)번호변경, 제32조, 제37조 제1항 제1호 개정)
2. (경과조치) ① 제8조(부설연구기관)의 수리과학연구소, 사회체육연구소, 통합의학연구소, 여성의학연구소 해산은 2013년 12월 2일자로 시행된 것으로 본다.
  - ② 제8조(부설연구기관)의 사회통합연구소는 2013년 11월 28일자로 신설된 것으로 본다.
  - ③ 제8조(부설연구기관)의 와인연구소에서 미생물제어연구소로의 명칭변경은 2014년 1월 7일자로, 사회정서발달연구소에서 생활과학연구소로의 명칭변경은 2014년 1월 15일자로 시행된 것으로 본다.
  - ④ 제12조(감사실)의 조번호 변경은 2013년 12월 24일자로 시행된 것으로 본다.
  - ⑤ 제19조(정보전산처)의 IT교육지원센터 해산은 2014년 2월 28일자로 시행된 것으로 본다.
  - ⑥ 제32조(산학협력단)의 의료원산학협력단 및 산학협력팀은 2014년 2월 1일자로 신설된 것으로 본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8조, 제17조, 제37조 제1항 개정)
2. (경과조치) ① 제3조 제1항의 대학·학부 개수의 조정은 정보대학신설에 따라 2014년 3월 1일자로 적용된 것으로 본다.
  - ② 제3조 제1항의 부설연구기관 개수의 조정은 나노과학연구소의 해산에 따라 2014년 5월 11일자로 적용된 것으로 본다.
  - ③ 제4조 제1항의 정보대학은 2014년 3월 1일자로 신설된 것으로 본다.
  - ④ 제8조 나노과학연구소는 2014년 5월 11일자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
  - ⑤ 제17조 안전관리팀에서 에너지·안전팀으로의 명칭변경은 2014년 5월 23일자로 적용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부설연구기관), 제30조(부속교육기관) 제2항, 제33조(의료원) 제2항, 제37조(직위) 개정)
2. (경과조치) ① 제8조(부설연구기관) 국어소통능력연구센터에서 국제한국언어문화연구소로의 명칭변경은 2014년 7월 11일자로 적용한다.
  - ② 제8조(부설연구기관) 계량금융기술연구소는 2014년 7월 17일자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
  - ③ 제8조(부설연구기관) 동물분자생체공학연구소는 2014년 7월 8일자로 신설된 것으로 본다.

- ④ 제30조(부속교육기관) 외국어교육센터에서 외국어센터로, 한국어문화교육센터에서 한국어센터로의 명칭변경은 2014년 6월 12일자로 적용한다.
- ⑤ 제33조(의료원) 감사팀은 2014년 7월 7일자로 신설된 것으로 본다.
- ⑥ 제37조(직위) 제2항 의무기획부처장 직위신설은 2014년 5월 23일자로 적용한다.
- ⑦ 제37조(직위) 의료원과 병원의 직제에 관한 조정은 2014년 7월 7일자로 적용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기구), 제5조(부속교육기관), 제6조(부속기관), 제7조(기타기관), 제8조(부설연구기관), 제11조(미래전략실), 제13조(기획예산처), 제14조(교무처), 제15조(학생처), 제16조(총무처), 제18조(대외협력처), 제19조(정보전산처), 제21조(입학처) 제22조(국제처), 제27조(교학처), 제32조(부속기관), 제37조(교육부총장·연구부총장·세종부총장·의무부총장), 제38조(직위) 개정, 제23조(기금기획본부), 제24조(연금기획본부), 제25조(대학사업단) 신설)
2. (경과조치)
  - ① 제3조(기구) 기금기획본부와 연구기획본부는 2015년 3월 1일자로 신설된 것으로 본다.
  - ② 제8조(부설연구기관) 청정화공시스템연구소에서 융합화공시스템연구소로의 명칭변경은 2014년 11월 4일자로 적용한다.
  - ③ 제8조(부설연구기관) 초고층·초장대기술연구소에서 초대형구조기술연구소의 명칭변경은 2014년 12월 31일자로 적용한다.
  - ④ 제8조(부설연구기관) 나노바이오공학연구소는 2014년 11월 3일자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
  - ⑤ 제8조(부설연구기관) 한국문화재복원연구소에서 색채연구소로의 명칭변경은 2014년 12월 17일자로 적용한다.
  - ⑥ 제8조(부설연구기관) 생물신소재연구소, 녹색생산기술연구소 및 오정에코리질리언스연구원은 2014년 11월 6일자로 신설된 것으로 본다.
  - ⑦ 제8조(부설연구기관) 통일한국보건의학연구소, 단일범국가재단의학연구소, 글로벌헬스텍연구소 및 국가생물방어연구소는 2015년 1월 7일자로 신설된 것으로 본다.
  - ⑧ 제8조(부설연구기관) 부부상담연구소에서 KU마음건강연구소로의 명칭변경은 2015년 4월 3일자로 적용한다.
  - ⑨ 제8조(부설연구기관) 좋은의사연구소는 2015년 3월 3일자로 신설된 것으로 본다.
  - ⑩ 제8조(부설연구기관) 위장관의료기기개발연구소는 2015년 3월 19일자로 신설된 것으로 본다.
  - ⑪ 제24조(연구기획본부) 연구기획팀과 R&D전략기획센터는 2015년 3월 30일자로 신설된 것으로 본다.
  - ⑫ 제27조(교학처) 세종교수학습지원팀에서 세종교수학습지원센터로의 명칭변경은 2015년 1월 29일자로 적용한다.
  - ⑬ 제32조(부속기관) 법학도서관 및 법학정보관리팀은 2015년 1월 29일자로 신설된 것으로 본다.
  - ⑭ 제37조(교육부총장·연구부총장·세종부총장·의무부총장) 교육부총장과 연구부총장 직위는 2015년 3월 1일자로 신설된 것으로 본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분장), 제3조(기구), 제4조(대학, 학부 및 대학원), 제5조(부속교육기관), 제6조(부속기관), 제7조(기타기관), 제8조(부설연구기관), 제11조(미래전략실), 제13조(기획예산처), 제14조(교무처), 제15조(학생처), 제16조(총무처), 제17조(관리처), 제19조(정보전산처), 제20조(연구처), 제21조(입학처), 제22조(국제처), 제24조(연구기획본부), 제26조(대학사업단), 제27조(기획처), 제28조(교학처), 제29조(사무처), 제30조(입학홍보처), 제31조(각 대학 및 대학원), 제32조(부속교육기관), 제33조(부속기관), 제34조(산학협력단), 제36조(의료원), 제37조(각 부속병원), 제38조(총장), 제39조(교육부총장·연구부총장·세종부총장·의무부총장), 제40조(직위) 개정, 제25조(학사지원본부), 제35조(세종산학협력단) 신설)
2. (경과조치) ① 제3조(기구) 인문사회계 학사지원본부, 자연계 학사지원본부는 2015년 6월 29일자로 신설된 것으로 본다.  
 ② 제3조(기구) KU-MAGIC연구원은 2015년 10월 15일자로 신설된 것으로 본다.  
 ③ 제3조(기구) KU 개척마을은 2016년 4월 14일자로 신설된 것으로 본다.  
 ④ 제3조(기구) 세종산학협력단은 2016년 4월 27일자로 신설된 것으로 본다.  
 ⑤ 제4조(대학·학부 및 대학원) 융합소프트웨어전문대학원은 2015년 8월 31일자로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⑥ 제5조(부속교육기관) 평생교육원, 영재교육원은 2015년 6월 8일자로 편제조정된 것으로 본다.  
 ⑦ 제5조(부속교육기관) RC센터와 세종평생교육원은 2016년 2월 4일자로 신설된 것으로 본다.  
 ⑧ 제6조(부속기관) 안암학사는 2015년 11월 26일자로 편제조정된 것으로 본다.  
 ⑨ 제6조(부속기관) 인권센터는 2016년 4월 12일자로 신설된 것으로 본다.  
 ⑩ 제6조(부속기관) 빅데이터 센터는 2015년 11월 19일자로 신설된 것으로 본다.  
 ⑪ 제6조(부속기관) 미래인재개발원은 2016년 2월 4일자로 신설된 것으로 본다.  
 ⑫ 제7조(기타기관) 공학교육혁신거점센터는 2016년 4월 25일자로 신설된 것으로 본다.  
 ⑬ 제7조(기타기관) 세종학생상담센터는 세종캠퍼스 조직개편에 따라 2016년 2월 4일자로 미래인재개발원에 통합, 건강바이오식품사업단은 2016년 2월 4일자로 해산, 세종장애학생지원센터는 2016년 2월 4일자로 편제조정된 것으로 본다.  
 ⑭ 제16조(총무처) 상조회는 2016년 3월 1일자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⑮ 제20조(연구처) 연구정보분석센터는 2015년 11월 19일자로 빅데이터 센터 신설에 따른 흡수통합된 것으로 본다.  
 ⑯ 제25조(학사지원본부) 학사지원행정체계 개편에 따라 2015년 7월 3일자로 인문사회계 학사지원본부의 인문사회계교육지원팀, 인문사회계행정지원팀과 자연계 학사지원본부의 자연계교육지원팀, 자연계행정지원팀은 신설, ONE-STOP 서비스센터는 편제조정된 것으로 본다.  
 ⑰ 제26조(대학사업단) 평생교육원과 영재교육원은 2015년 6월 8일자로, 안암학사는 2015년 11월 26일자로 편제조정된 것으로 본다.  
 ⑱ 제31조(각 대학 및 대학원) 계림실험동물자원센터는 2015년 8월 17일자로 신설, 교수학습지원센터의 의학교육센터로의 명칭변경은 2015년 10월 13일자,

생물안전센터는 2015년 8월 26일자로 신설, 교직팀은 2015년 6월 19자로 신설, 각 안암캠퍼스 학사지원부(팀)의 행정실로의 명칭변경은 2015년 7월 3일자로, 세종캠퍼스 학사지원부(팀)의 행정실로의 명칭변경은 2016년 2월 4일자로 된 것으로 본다.

⑲ 제33조 (부속기관) 미래인재개발원의 운영지원팀, 세종경력개발센터, 세종창업교육센터, 세종학생상담센터는 세종캠퍼스 조직개편에 따라 2016년 2월 4일자로 신설 및 편제조정, 보건과학도서관은 2015년 3월 30일자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⑳ 제34조 (산학협력단) 연구감사실은 2015년 11월 19일자로 신설, 세종산학협력실은 2016년 6월 1일자로 편제조정된 것으로 본다.

㉑ 제35조 (세종산학협력단) 세종산학협력단 신설에 따라 기술기획팀, 연구지원팀은 2016년 6월 1일자로 신설, 기존 창업보육센터로 2016년 6월 1일자로 명칭변경 및 편제조정된 것으로 본다.

㉒ 제36조 (의료원) 본부의 행정부서로의 명칭변경은 2015년 5월 18일자로 된 것으로 본다.

㉓ 제37조 (각 부속병원) 교육수련부, 적정진료관리부는 2015년 5월 18일자로 신설된 것으로 본다.

㉔ 제40조 (직위) 제2항 인문사회계 학사지원본부장, 자연계학사지원본부장 직위는 2015년 6월 29일자로 신설된 것으로 본다.

㉕ 제40조 (직위) 제3항의 기획부처장, 교학부처장 직위는 2016년 5월 26일자로 신설된 것으로 본다.

㉖ 제40조 (직위) 제11항의 KU 개척마을 촌장 직위는 2016년 4월 14일자로 신설된 것으로 본다.

㉗ 제40조 (직위) 제12항의 세종산학협력단장 직위는 2016년 6월 1일자로 신설된 것으로 본다.

㉘ 별표1의 여행의학연구소의 여행질환체외진단기술연구소로의 명칭변경은 2015년 8월 26일자로, 일본연구센터의 글로벌일본연구원으로의 명칭변경은 2015년 6월 22일자로 된 것으로 본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기구), 제4조(대학, 학부 및 대학원), 제6조(부속기관), 제7조(기타기관), 제8조(부설연구기관), 제13조(기획예산처), 제14조(교무처), 제17조(관리처), 제20조(연구처), 제21조(입학처), 제22조(국제처), 제25조(학사지원본부), 제26조(대학사업단), 제33조(교학처), 제37조(각 대학 및 대학원), 제38조(부속교육기관), 제39조(부속기관), 제42조(의료원), 제43조(각 부속병원), 제45조(교육부총장·연구부총장·세종부총장·의무부총장), 제46조(직위) 개정, 제27조(KU-MAGIC 연구원), 제28조(KU개척마을), 제29조(최첨단융복합의학센터 추진본부), 제30조(캠퍼스타운 조성 추진단), 제31조(융합연구원), 제36조(미래인재개발원) 신설)
2. (경과조치) ① 제3조(기구) 입학처에서 인재발굴처로의 부서명칭 변경은 2017년 3월 1일자로 된 것으로 본다.  
 ② 제3조(기구) 최첨단융복합의학센터 추진본부는 2016년 7월 1일자로 신설된 것으로 본다.  
 ③ 제3조(기구) 캠퍼스타운 조성 추진단은 2016년 7월 29일자로 신설된 것으로 본다.  
 ④ 제3조(기구) 융합연구원은 2017년 1월 23일자로 신설된 것으로 본다.

- ⑤ 제3조(기구) 미래인재개발원은 2016년 11월 1일자로 편제조정된 것으로 본다.
- ⑥ 제4조(대학·학부 및 대학원) 인문대학, 경상대학, 공공행정학부, 국제스포츠학부 및 행정대학원의 폐지와 문화스포츠대학, 글로벌비즈니스대학, 공공정책대학 및 행정전문대학원의 신설은 2017년 3월 1일자로 된 것으로 본다.
- ⑦ 제6조 (부속기관) 출판문화원은 2016년 8월 8일자로 편제조정된 것으로 본다.
- ⑧ 제6조 (부속기관) 노르딕-베네룩스센터는 2016년 8월 10일자로 신설된 것으로 본다.
- ⑨ 제14조 (교무처) 국제교육원은 2017년 1월 23일자로 신설된 것으로 본다.
- ⑩ 제20조 (연구처) 연구윤리센터는 2016년 10월 10일자로 신설된 것으로 본다.
- ⑪ 제22조 (국제처) 국제지원센터를 국제교육팀으로, 국제교육팀에서 국제입학팀으로의 명칭변경 및 편제조정, 국제동계대학의 신설은 2016년 11월 21일자로 신설된 것으로 본다.
- ⑫ 제22조 (학사지원본부) 글로벌서비스센터는 2016년 11월 21일자로 신설된 것으로 본다.
- ⑬ 제33조 (교학처) 세종교육혁신센터는 2016년 9월 1일자로 신설된 것으로 본다.
- ⑭ 제38조 (부속교육기관) 국제교류교육원의 언어교육센터, 국제교육센터, RC센터 운영지원팀 및 세종평생교육원 운영지원팀은 2015년 12월 31일자로 신설된 것으로 본다.
- ⑮ 제42조 (의료원) 홍보팀에서 커뮤니케이션팀으로의 명칭변경, 경영전략팀의 폐지 및 미래전략팀, 경영평가팀의 신설은 2017년 5월 11일로 된 것으로 본다.
- ⑯ 제43조 (각 부속병원) 홍보실은 2017년 5월 11일자로 신설된 것으로 본다.
- ⑰ [별표1] 부설연구기관의 과학기술학연구소, 여행질환체외진단기술연구소 및 의료법학연구소는 2016년 10월 11일자로 해산된 것으로 보고, 전기전자공학연구소는 2016년 11월 1일자로 정보·통신기술연구소와 통·폐합된 것으로 보며, 의료서비스혁신연구소, 시간생물학연구소 및 융합뇌신경연구소는 2017년 3월 1일자로 신설된 것으로 본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0조, 제40조, 제46조, 별표1 개정)
2. (경과조치) ① 제 3조(기구) CORE사업단은 2016년 8월 10일자로, LINC플러스사업본부는 2017년 5월 23일자로 신설된 것으로 본다.
  - ② 제20조(연구처) 연구정보분석센터는 2017년 7월 10일자로 신설된 것으로 본다.
  - ③ 제40조(산학협력단) 산학기획부에서 산학지원부로의 명칭변경은 2017년 7월 19일자로, 창업보육센터에서 크림슨창업보육센터로의 명칭변경은 2017년 8월 17일자로 시행된 것으로 본다.
  - ④ 제46조(직위)제2항 인문사회계학사지원본부장과 자연계학사지원본부장의 학사지원본부장으로 통합은 2017년 7월 1일자로, 중앙도서관 부관장의 신설은 2017년 3월 1일자로, 연구정보분석센터장의 신설은 2017년 7월 10일자로 신설된 것으로 본다.
  - ⑤ 제6조(부속기관) 빅데이터센터는 12월 18일자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
  - ⑥ [별표1]부설연구기관 초대형구조기술연구소에서 초대형건설기술연구소로의 명칭변경은 2017년 6월 9일자로 시행된 것으로 본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제4조, 제6조, 제35조, 제41조 내지 제51조, 별표1 개정)
2. (경과조치) ① 제4조(대학, 학부 및 대학원) 법과대학의 폐지는 2018년 3월 1일자로 된 것으로 본다.
  - ② 제4조(대학, 학부 및 대학원) 인문정보대학원에서 문화스포츠대학원으로의 명칭 변경은 2017년 9월 1일자로 된 것으로 본다.
  - ③ 제6조(부속기관) 양성평등센터에서 성평등센터로의 명칭변경은 2018년 3월 1일자로 된 것으로 본다.
  - ④ 제35조(교학처) 세종교양교육원은 2018년 1월 1일자로 신설된 것으로 본다.
  - ⑤ 제40조(각 대학 대학원) K2융합공동기기센터는 2017년 6월 1일자로 신설된 것으로 본다.
  - ⑥ 제41조 언어교육센터는 2018년 1월 1일자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
  - ⑦ [별표1] 부설연구기관 고고환경연구소에서 문화유산융합연구소로의 명칭 변경은 2018년 1월 31일자로 된 것으로 본다.
  - ⑧ [별표1] 부설연구기관의 생체활성분자연구소는 2017년 9월 7일자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
  - ⑨ [별표1] 부설연구기관의 과학기술학연구소 및 기초과학연구소는 2017년 11월 7일자로 해산이 철회된 것으로 본다.
  - ⑩ [별표1] 부설연구기관의 스타트업연구원 및 HRD정책연구소는 2017년 11월 27일자로, 기계학습및빅데이터연구원은 2017년 11월 1일자로 신설된 것으로 본다.
  - ⑪ [별표1] 부설연구기관의 환경기술정책연구소에서 미래환경에너지인프라연구소로의 명칭변경은 2018년 4월 17일자로 된 것으로 본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제13조, 제29조 내지 제35조, 제38조, 제40조 내지 제52조 및 별표1 개정)
2. (경과조치) ① 제13조(기획예산처) 정보전략팀은 2018년 5월 18일자로 신설된 것으로 본다.
  - ② 제29조(최첨단융복합의학센터 추진본부) 최첨단융복합의학센터 추진본부는 2018년 6월 30일자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
  - ③ 제32조(LINC플러스 사업본부) LINC플러스 사업본부의 직제 개편은 2018년 8월 22자로 된 것으로 본다.
  - ④ 제33조(크림슨창업지원단) 크림슨창업지원단은 2018년 5월 9일자로 신설된 것으로 본다.
  - ⑤ 제35조(교학처) 세종교육혁신센터의 교학처에서 기획처로의 편제 조정은 2018년 7월 1일자로 된 것으로 본다.
  - ⑥ 제38조(미래인재개발원) 세종창업교육센터의 미래인재개발원에서 세종창업지원단으로의 편제 조정은 2018년 5월 24일자로 된 것으로 본다.
  - ⑦ 제40조(세종창업지원단) 세종창업지원단은 2018년 5월 24일자로 신설된 것으로 본다.
  - ⑧ 제44조(산학협력단) 크림슨창업센터에서 크림슨창업지원단으로의 직제 개편은 2018년 5월 9일자로 된 것으로 본다.

- ⑨ 제 45조(세종산학협력단) 세종산학협력단에서 세종창업지원단으로의 창업보육센터 편제 조정은 2018년 5월 24일자로 된 것으로 본다.
- ⑩ 제 45조(세종산학협력단) 연구전략기획팀은 2018년 9월 1일자로 신설된 것으로 본다.
- ⑪ 제46조(의료원) 교류협력팀의 부서명 변경 및 연구전략본부, 연구대상자보호팀, 기금사업본부의 신설은 2018년 11월 15일자로 된 것으로 본다.
- ⑫ [별표1] 부설연구기관의 환경기술정책연구소에서 미래환경에너지인프라연구소로의 명칭 변경은 2018년 4월 1일자로 된 것으로 본다.
- ⑬ [별표1] 부설연구기관의 국정설계연구소는 2018년 5월 31일자로 신설된 것으로 본다.
- ⑭ [별표1] 부설연구기관의 소프트웨어보안연구소는 2018년 11월 6일자로 신설된 것으로 본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제6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38조, 제44조, 제45조 및 별표1 개정, 제11조 내지 제47조 조번호 변경)
2. (경과조치) ① 제3조(기구) 미래전략실 및 기금기획본부는 2019년 3월 1일자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
  - ② 제3조(기구) CORE사업단은 2019년 2월 28일, LINC플러스사업본부는 2019년 4월 30일자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
  - ③ 제12조(기획예산처) 대학정책연구원은 2018년 9월 1일자 신설된 것으로 본다.
  - ④ 제17조(대외협력처) 미래전략실 및 기금기획본부의 해산에 따라 대외협력처 산하 커뮤니케이션팀 및 기금기획부는 2019년 3월 1일자로 편제조정 된 것으로 본다.
  - ⑤ 제28조(대학혁신지원사업단) 대학혁신지원사업단은 2019년 4월 8일자 신설된 것으로 본다.
  - ⑥ 제38조(부속기관) 대학사업단, 캠퍼스타운조성추진단 및 KU-MAGIC연구원은 2019년 3월 1일자로 편제조정 된 것으로 본다.
  - ⑦ 제46조(교무부총장) 교무부총장 직위는 2019년 3월 1일자 신설된 것으로 본다.
  - ⑧ 제47조(직위) 대학정책연구원장 직위는 2018년 9월 1일자 신설된 것으로 본다.
  - ⑨ [별표1] 부설연구기관의 융복합신약개발연구소, 가속기연구센터는 2019년 3월 1일자로 신설된 것으로 본다.
  - ⑩ [별표1] 부설연구기관의 블록체인연구소는 2019년 4월 3일자로 신설된 것으로 본다.
  - ⑪ [별표1] 부설연구기관의 테라헤르츠연구소는 2019년 5월 1일자로 신설된 것으로 본다.
  - ⑫ [별표1] 부설연구기관의 방재과학기술연구소, 지하공간기술연구소, 미래환경에너지인프라연구소는 초대형건설기술연구소로 2019년 6월 1일자로 통폐합된 것으로 본다.
  - ⑬ [별표1] 부설연구기관의 제브라피쉬중개의학연구소는 2019년 5월 1일자로 신



설된 것으로 본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제5조, 제29조 내지 제38조, 40조 및 48조 개정, 제30조 내지 제50조 조 번호 변경)
2. (경과조치) ① 제3조(기구) 세종CK사업단은 2019년 3월 1일자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제29조(세종비서실) 세종비서실은 2015년 12월 30일자 신설된 것으로 본다.  
 ③ 제32조(사무처) 안전팀은 2019년 6월 1일자 신설된 것으로 본다.  
 ④ 제35조(미래인재개발원) 세종HRD사업단 사업운영팀은 2019년 1월 31일자 신설된 것으로 본다.  
 ⑤ 제37조(KUS대학혁신사업단) KUS대학혁신사업단은 2019년 3월 27일자 신설된 것으로 본다.  
 ⑥ 제38조(대학일자리센터) 대학일자리센터는 2018년 5월 2일자 신설된 것으로 본다.  
 ⑦ 제48조(직위) 세종장애학생지원센터장 직위는 2010년 9월 1일자 신설된 것으로 본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제4조, 제39조, 제48조)
2. (경과조치) ① 제4조(대학, 학부 및 대학원) 정보통신대학은 2020년 1월 1일 폐지된 것으로 보며, 정보통신대학 산하 조직은 정보대학으로 이관한다.  
 ② 제4조(대학, 학부 및 대학원) 그린스쿨(에너지환경정책기술대학원)은 에너지환경대학원(그린스쿨)으로, 언론대학원은 미디어대학원으로 2019년 9월 1일자로 명칭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 제42조(산학협력단) 구매자산팀은 2019년 9월 1일자로 신설된 것으로 본다.  
 ④ [별표1] 아세아문제연구원 명칭은 2020년 1월 6일자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제6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40조, 제42조, 제49조)
2. (경과조치) ① 제6조(부속기관) 중앙실험동물센터는 2020년 4월 1일자로 신설된 것으로 본다.  
 ② 제23조(KU개척마을) Makerspace는 2019년 10월 15일자로 신설된 것으로 본다.  
 ③ 제24조(교양교육원) 교양교육원행정실은 2020년 3월 18일자로 신설된 것으로 본다.  
 ④ 제25조(교수학습개발원) 교육성과관리팀은 2020년 3월 10일자로 신설된 것으로 본다.  
 ⑤ 제29조(데이터과학원) 데이터과학원은 2020년 3월 5일자로 신설된 것으로

본다.

- ⑥ 제40조(각 대학 및 대학원) 공학대학원 산하 도시재생교육센터는 2020년 4월 16일 자로 신설된 것으로 본다.
- ⑦ 제49조(직위) 제10항의 Makerspace 소장의 직위는 2019년 10월 15일 자로, 제18항의 데이터과학원장 직위는 2020년 3월 5일 자로 신설된 것으로 본다.
- ⑧ [별표1] 헬스케어융합연구소는 2019년 9월 1일 자로 설립된 것으로 본다.
- ⑨ [별표1] 오정에코리질리언스연구원, 환경생태연구소 및 환경GIS/RS센터는 2020년 3월 1일 자로 오정리질리언스연구원으로 통폐합된 것으로 본다.
- ⑩ [별표1] 공학기술연구소 및 에너지기술공동연구소는 2020년 3월 13일 자로 공학연구원으로 통합된 것으로 본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제6조, 제13조, 제23조, 제26조, 제36조, 제40조, 제42조, 제44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 제51조)
2. (경과조치)
  - ① 제6조(부속기관) KU-MAGIC연구원은 2020년 7월 1일 자로 의료원 의학연구처로 통합된 것으로 본다.
  - ② 제13조(교무처) 교육혁신팀은 2020년 9월 1일 자로 신설된 것으로 본다.
  - ③ 제23조(대학원혁신본부) 대학원혁신본부 및 산하 부서는 2020년 9월 1일 자로 신설된 것으로 본다.
  - ④ 제26조(교수학습개발원) 교육성과관리팀은 2020년 9월 1일 자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
  - ⑤ 제36조(연구산학처) 대학원연구교육팀은 2020년 9월 1일 자로 신설된 것으로 본다.
  - ⑥ 제42조(각 대학 및 대학원) 생명과학대학 산하 계림실험동물자원센터 및 보건과학대학 산하 실험동물자원센터는 2020년 8월 31일 자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
  - ⑦ 제45조(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 산하 조직은 2020년 6월 18일 자로 개편된 것으로 본다.
  - ⑧ 제47조(의료원) 의료원 행정부서는 2020년 5월 14일 자로 개편된 것으로 본다.
  - ⑨ 제50조(부총장) 부총장으로서 대학원장은 2020년 9월 1일 자로 신설된 것으로 본다.
  - ⑩ 제51조(직위) 제2항의 대학원혁신본부장 및 제3항의 연구산학처장 직위는 2020년 9월 1일 자로 신설된 것으로 보며, 제24항의 의학연구처장 직위는 2020년 5월 14일 자로 연구교학처장에서 명칭변경된 것으로 본다.
  - ⑪ [별표1] 초대형건설기술연구소에서 미래건설환경융합연구소로의 명칭 변경은 2020년 9월 1일자로 된 것으로 본다.
  - ⑫ [별표1] 인공지능연구소는 2020년 5월 1일자 설립된 것으로 본다.
  - ⑬ [별표1] Human-Inspired AI연구소는 2020년 4월 1일자 설립된 것으로 본다.

## 부 칙

-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51조제3항, 제20항 및 제23항 개정)

[별표1] 부설연구기관

연번	명칭
1	아세아문제연구원
2	민족문화연구원
3	기업경영연구원
4	법학연구원
5	한국근층연구소
6	경제연구소
7	생명자원연구소
8	노동문제연구소
9	공학연구원
10	영미문화연구소
11	행동과학연구소
12	정보문화연구소
13	기초과학연구원
14	범의학연구소
15	교육문제연구소
16	바이러스병연구소
17	환경의학연구소
18	독일어권문화연구소
19	통계연구소
20	러시아·CIS연구소
21	한국분자의학·영양연구소
22	생명공학연구소
23	한국학연구소
24	세종경영연구소
25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26	정부학연구소
27	에너지기술공동연구소
28	첨단소재부품개발연구소
29	정보·통신기술연구소
30	자연과학연구소
31	전략광물자원연구소
32	신경과학연구소
33	언어정보연구소
34	일민국제관계연구원
35	암연구소
36	문화유산융합연구소
37	차세대기계설계기술연구소
38	컴퓨터·정보통신연구소
39	반도체기술연구소
40	한국사회연구소
41	철학연구소

42	정신건강연구소
43	간호학연구소
44	임프란트연구소
45	유전병연구소
46	세계지역연구소
47	중국학연구소
48	융합화공시스템연구소
49	산업기술연구소
50	건강기능식품연구센터
51	신종전염병연구소
52	미래건설환경융합연구소
53	정보보호연구원
54	글로벌일본연구원
55	심장혈관연구소
56	피부영상의학연구소
57	인간유전체연구소
58	기업지배구조연구소
59	교과교육연구소
60	지속발전연구소
61	척추측만증연구소
62	줄기세포연구소
63	한국인공장기센터
64	식품생의학안전연구소
65	인간행동과유전자연구소
66	미래네트워크연구소
67	생활과학연구소
68	한자·한문연구소
69	노인건강연구소
70	번역과레토릭연구소
71	역사연구소
72	KU마음건강연구소
73	보건과학연구소
74	희귀질환연구소
75	응용문화연구소
76	스페인·라틴아메리카연구소
77	동아시아문화교류연구소
78	경제통계연구소
79	광전자신소재연구소
80	국제한국언어문화연구소
81	정보창의교육연구소
82	지혜과학연구센터
83	임상치의학연구소
84	영어교육연구소

85	고등교육정책연구소
86	두뇌동기연구소
87	차세대게임연구센터
88	재생의학연구소
89	뇌공학연구소
90	한국사연구소
91	미생물제어소재연구소
92	약과학연구소
93	근거중심의학연구소
94	한국어문교육연구소
95	기초과학연구소
96	부인암연구소
97	공공정책연구소
98	전력시스템기술연구소
99	융합소프트웨어연구소
100	의료기기임상시험연구소
101	동아시아인문사회연구원
102	융합문명연구원
103	번역인문학연구원
104	외상연구소
105	아시아태평양인플루엔자연구소
106	난치성질환증개연구소
107	나노기술연구소
108	미래국토연구소
109	색채연구소
110	실용해부연구소
111	알레르기면역연구소
112	한류융복합연구소
113	대사증후군연구소
114	염증제어연구소
115	미래성장연구소
116	국제개발협력연구원
117	융합기술연구소
118	사회통합교육연구소
119	동물분자생체공학연구소
120	생물신소재연구소
121	녹색생산기술연구소
122	오정리질리언스연구원
123	통일한국보건의학연구소
124	단원범국가재난의학연구소
125	글로벌헬스텍연구소
126	국가생물방어연구소
127	좋은의사연구소

128	위장관의료기기개발연구소
129	의료서비스혁신연구소
130	시간생물학연구소
131	융합뇌신경연구소
132	과학기술학연구소
133	스타트업연구원
134	HRD정책연구소
135	기계학습및빅데이터연구원
136	국정설계연구소
137	소프트웨어보안연구소
138	융복합신약개발연구소
139	가속기연구센터
140	블록체인연구소
141	테라헤르츠연구소
142	제브라피쉬중개의학연구소
143	헬스케어융합연구소
144	인공지능연구소
145	Human-Inspired AI연구소